|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중국은보감회령 2019년 제4호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곽수청  2019년 11월 29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일컫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 경내에서 등록하고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외국보험회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합자하여 중국 경내에서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합자보험회사(이하 ‘합자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중 외자비율은 회사 총 지분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국은보감회(이하 ‘은보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합자생명보험회사 지분은 전항에서 규정한 비율제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외자보험회사는 최소한 1개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하고, 지분변경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후 최소한 1개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한다.  주요 주주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 또한 법률, 행정법규, 은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회사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주를 가리킨다.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행동일치인[[1]](#footnote-1)의 지분율은 합병하여 계산한다.  **제5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는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외자보험회사 정관에 명기한다.  은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위험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은보감회가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하는 경우, 사법강제집행과 관련된 경우, 혹은 동일 통제인이 통제하는 다른 주체 간의 지분양도 등 특수상황은 제외한다.  **제6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가 지분권을 줄이거나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 의무를 다하고, 보험회사의 변제능력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실제 납입한 현금이어야 한다.  **제8조** 외국보험회사의 분공사 설립 후, 외국보험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9조**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신청전 1년 연말은 신청일의 직전 1개 회계연도 말을 의미한다.  **제10조** <조례> 제8조 제5항에서 일컫는 기타 신중성 조건에 최소한 아래 조건을 포함한다.  10.1 법인관리구조 합리적  10.2 위험관리체계 안정적  10.3 내부통제제도 건전성  10.4 관리정보시스템 유효  10.5 경영상황 양호, 중대한 위법위규 기록 無  **제11조** 신청인은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요구한 영업집조(부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영업집조 사본 또는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해당 신청인이 보험업무 경영 권한을 가진 서면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이 변제능력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은 아래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에 해당 신청인의 변제능력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  12.2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 중 해당 신청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기준에 부합함을 기록  **제13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은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3.1 해당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3.2 해당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13.3 유관 주관당국이 의견을 발급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해당 신청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  **제14조**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일컫는 연도보고에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술한 보고서에는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허가한 회계사무소 또는 감사사무소에서 발급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였거나 또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제9조 제4항에서 일컫는 중국 신청인은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설립예정인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계획 책임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6.1 전문대 이상 학력  16.2 보험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16.3 위법범죄기록 無  **제17조** 신청인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계획 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설립계획 기간 만료일 전 1개월 내 은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계획보고는 해당하는 조항 기타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종합 서술하여야 한다.  **제19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합법적인 험자기구(자금조사기구)는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무소를 의미한다.  **제20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험자증명(자본납입증명)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 합법적인 험자기구(자금조사기구)가 발급한 험자보고(자본납입증명서)  20.2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은행 원시 증빙 사본  **제21조** <조례> 제11조 제5항에서 일컫는 주요 책임자는 설립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를 의미한다.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주요 책임자의 수권서는 외국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를 의미한다.  수권서에는 피수권인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제11조 제6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은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고급관리인원은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영업장소 자료는 영업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문건을 의미한다.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업무와 관련된 기타시설 자료에는 최소한 컴퓨터 설비 배치, 인터넷 구축 상황 및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을 포함한다.  **제24조** <조례>와 본 세칙 요구에 따라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고자 외국보험회사가 제공한 아래 문건 또는 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24.1 유효한 영업집조(부본) 또는 영업집조 사본  24.2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  24.3 외국보험회사의 중국 경내 분공사가 부담하는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담보서  **제25조** 외자보험회사는 업무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자보험회사 분공사는 그 소재지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행정관할 구역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은보감회에서 별도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할 경우, 분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지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외자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심사와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세칙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가 분리,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으로 인해 해산을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비준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7.1 회사 동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27.2 회사 주주회 결의  27.3 구성하고자 하는 청산조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27.4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제28조** 은보감회의 해산 비준을 거친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는 은보감회 비준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새로운 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은보감회에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반환한 후 15일 내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청산조는 구성일로부터 5일 내 회사 청산절차 개시 상황을 시장감독관리, 세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유관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산조는 구성일로부터 1개월 내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초빙일로부터 3개월 내 은보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산조는 매월 10일 전 은보감회에 채무상환 및 자산처분 등 최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조례> 제28조에서 일컫는 신문이란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적인 신문을 의미한다.  **제33조** 외국손해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분공사 폐쇄를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비준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1 외국손해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33.2 구성하고자 하는 청산조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33.3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외국손해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분공사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및 본 세칙 합자, 외자손해보험회사 관련 해산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손해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가 해산 및 법에 의거 폐쇄 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외국손해보험회사 분공사의 청산 및 채무 처리는 <조례> 제30조 및 본 세칙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 해산 관련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외자보험회사가 본 세칙 유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35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제출 및 발송을 요구하는 문건, 자료와 서면 보고는 중문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문과 외국어가 불일치할 경우, 중문본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유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 기한은 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은보감회에 발송한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본 세칙에서 비준 및 보고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업무일을 의미한다.  **제37조**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가 <조례>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와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외자재보험회사의 설립은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을 적용하고,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보험회사가 내지(대륙)에 설립하여 영업중인 보험회사는 <조례>와 본 세칙을 비교 대조하여 적용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행정협의는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04년 5월 1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보감회령 2004년 제4호)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  **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令2019年第4号  现公布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自公布之日起施行。  主席 郭树清  2019年11月29日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和《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细则。  **第二条** 《条例》所称外国保险公司，是指在中国境外注册、经营保险业务的保险公司。  **第三条**　外国保险公司与中国的公司、企业合资在中国境内设立经营人身保险业务的合资保险公司（以下简称合资寿险公司），其中外资比例不得超过公司总股本的51%。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银保监会）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外国保险公司直接或者间接持有的合资寿险公司股份，不得超过前款规定的比例限制。  **第四条** 外资保险公司至少有1家经营正常的保险公司作为主要股东，进行股权变更的，变更后至少有1家经营正常的保险公司作为主要股东。  主要股东是指持股比例最大的股东，以及法律、行政法规、银保监会规定的其他对公司经营管理有重大影响的股东。股东与其关联方、一致行动人的持股比例合并计算。  **第五条** 外资保险公司主要股东应当承诺自取得股权之日起5年内不转让所持有的股权，并在外资保险公司章程中载明。  经银保监会批准进行风险处置的，银保监会责令依法转让的，涉及司法强制执行的，或者在同一控制人控制的不同主体之间转让股权等特殊情形除外。  **第六条** 外资保险公司主要股东拟减持股权或者退出中国市场的，应当履行股东义务，保证保险公司偿付能力符合监管要求。  **第七条**　外资保险公司的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应当为实缴货币。  **第八条**外国保险公司分公司成立后，外国保险公司不得以任何形式抽回营运资金。  **第九条** 《条例》第八条第一项所称设立申请前1年年末，是指申请日的上一个会计年度末。  **第十条** 《条例》第八条第五项所称其他审慎性条件，至少包括下列条件：  （一）法人治理结构合理；  （二）风险管理体系稳健；  （三）内部控制制度健全；  （四）管理信息系统有效；  （五）经营状况良好，无重大违法违规记录。  **第十一条** 申请人不能提供《条例》第九条第二项要求的营业执照（副本）的，可以提供营业执照的有效复印件或者有关主管当局出具的该申请人有权经营保险业务的书面证明。  **第十二条** 《条例》第九条第二项所称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对其符合偿付能力标准的证明，应当包括下列内容之一：  （一）在有关主管当局出具证明之日的上一个会计年度，该申请人的偿付能力符合该国家或者地区的监管要求；  （二）在有关主管当局出具证明之日的上一个会计年度中，该申请人没有不符合该国家或者地区偿付能力标准的记录。  **第十三条**　《条例》第九条第二项所称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对其申请的意见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该申请人申请在中国境内设立保险机构是否符合该国家或者地区的法律规定;  （二）是否同意该申请人的申请;  （三）在有关主管当局出具意见之日的前3年，该申请人受处罚的记录。  **第十四条**《条例》第九条第三项所称年报，应当包括申请人在申请日的前3个会计年度的资产负债表、利润表和现金流量表。  前款所列报表应当附由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认可的会计师事务所或者审计师事务所出具的审计意见书。  **第十五条**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经国务院批准外，《条例》第九条第四项所称中国申请人应当符合《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等相关规定要求。  **第十六条**　拟设外资保险公司的筹建负责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大专以上学历；  （二）从事保险或者相关工作2年以上；  （三）无违法犯罪记录。  **第十七条**申请人根据《条例》第十一条规定申请延长筹建期的，应当在筹建期期满之日的前1个月以内向银保监会提交书面申请，并说明理由。  **第十八条** 《条例》第十一条第一项所称筹建报告，应当对该条其他各项的内容作出综述。  **第十九条** 《条例》第十一条第四项所称法定验资机构，是指符合银保监会要求的会计师事务所。  **第二十条** 《条例》第十一条第四项所称验资证明，应当包括下列内容：  （一）法定验资机构出具的验资报告；  （二）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的银行原始入账凭证的复印件。  **第二十一条** 《条例》第十一条第五项所称主要负责人，是指拟设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总经理。  对拟任外国保险公司分公司主要负责人的授权书，是指由外国保险公司董事长或者总经理签署的、对拟任外国保险公司分公司总经理的授权书。  授权书应当明确记载被授权人的权限范围。  **第二十二条**　《条例》第十一条第六项所称拟设公司的高级管理人员，应当符合银保监会规定的任职资格条件。  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高级管理人员，应当具备保险公司总公司高级管理人员的任职资格条件。  **第二十三条**　《条例》第十一条第九项所称拟设公司的营业场所的资料，是指营业场所所有权或者使用权的证明文件。  《条例》第十一条第九项所称与业务有关的其他设施的资料，至少包括计算机设备配置、网络建设情况以及信息管理系统情况。  **第二十四条**　《条例》和本细则要求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外国保险公司提供的下列文件或者资料，应当真实有效：  （一）营业执照（副本）或者营业执照的有效复印件；  （二）对拟任外国保险公司分公司主要负责人的授权书；  （三）外国保险公司对其中国境内分公司承担税务、债务的责任担保书。  **第二十五条** 外资保险公司可以根据业务发展需要申请设立分支机构。  外国保险公司分公司只能在其所在省、自治区或者直辖市的行政辖区内开展业务，银保监会另有规定的除外。  合资保险公司、独资保险公司在其住所地以外的各省、自治区、直辖市开展业务的，应当设立分支机构。分支机构的设立和管理适用银保监会的有关规定。  **第二十六条**　外资保险公司及其分支机构的高级管理人员，其任职资格审核与管理，按照银保监会的有关规定执行，本细则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七条**　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因分立、合并或者公司章程规定的解散事由出现，申请解散的，应当报银保监会批准，并提交下列资料：  （一）公司董事长签署的申请书；  （二）公司股东会的决议；  （三）拟成立的清算组人员构成及清算方案；  （四）未了责任的处理方案。  **第二十八条**　经银保监会批准解散的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应当自收到银保监会批准文件之日起，停止新的业务经营活动，向银保监会缴回经营保险业务许可证，并在15日内成立清算组。  **第二十九条**　清算组应当自成立后5日内将公司开始清算程序的情况书面通知市场监督管理、税务、人力资源社会保障等有关部门。  **三十条**第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1个月内聘请符合银保监会要求的会计师事务所进行审计；自聘请之日起3个月内向银保监会提交审计报告。  **第三十一条**　清算组应当在每月10号前向银保监会报送有关债务清偿、资产处置等最新情况报告。  **第三十二条**　《条例》第二十八条所称报纸，是指具有一定影响的全国性报纸。  **第三十三条**　外国财产保险公司申请撤销其在中国境内分公司的，应当报银保监会批准，并提交下列资料：  （一）外国财产保险公司董事长或者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拟成立的清算组人员构成及清算方案；  （三）未了责任的处理方案。  外国财产保险公司撤销其在中国境内分公司的具体程序，适用《条例》及本细则有关合资、外资财产保险公司申请解散的程序。  外国财产保险公司分公司的总公司解散、依法被撤销或者宣告破产的，外国财产保险公司分公司的清算及债务处理适用《条例》第三十条及本细则有关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解散的相应规定。  **第三十四条**　外资保险公司违反本细则有关规定的，由银保监会依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条例》等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第三十五条** 《条例》及本细则要求提交、报送的文件、资料和书面报告，应当提供中文本，中外文本表述不一致的，以中文本的表述为准。  **第三十六条** 《条例》及本细则规定的期限,从有关资料送达银保监会之日起计算。申请人申请文件不全、需要补交资料的，期限应当从申请人的补交资料送达银保监会之日起重新计算。  本细则有关批准、报告期间的规定是指工作日。  **第三十七条**　对外资保险公司的管理，《条例》和本细则未作规定的，适用其他法律、行政法规与银保监会的有关规定。  外资再保险公司的设立适用《再保险公司设立规定》，《再保险公司设立规定》未作规定的，适用本细则。  **第三十八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保险公司在内地(大陆)设立和营业的保险公司，比照适用《条例》和本细则；法律、行政法规或者行政协议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三十九条**　本细则自公布之日起施行。原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4年5月13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保监会令2004年第4号）同时废止。 |

1. 행동일치인(一致行动人): 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1개 상장회사의 표결권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자 [↑](#footnote-ref-1)